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합11711, 2019가합10128, 2019가합21456 판결
[2018가합11711(본소)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2019가합10128(반소)
주식인도청구2019가합21456(반소) 주식인도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신영섭, 신우진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이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함과 동시에 원고(반소원고) A에게 118,000,000원을 지급하고,

- 나. 원고(반소피고) B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함과 동시에 원고(반소원고) B에게 63,500,000원을 지급하고,
- 다. 원고(반소피고) C이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함과 동시에 원고(반소원고) C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하라.
3.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3,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하라.
4. 원고(반소피고) C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하라.
5.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612,000,000원, 원고 B에게 459,000,000원, 원고 C에게 61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반소(2019가합10128) : 주문 제4항과 같다.

제2반소(2019가합21456) :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장비 부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이다.

2) 원고 A은 2013.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원고 B는 2013.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원고 C은 E 설립 시부터 2017. 9.경까지 E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 C의 E 주식 취득 및 현금 증여계약 체결

1) 2011. 7. 25. E의 설립 당시 피고는 264,000주, 원고 C은 2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데, 원고 C의 위 주식은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다.

2) 원고 C과 피고는 2015. 10.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증여시기]

피고는 원고 C에 대해 2015. 10. 23.까지 40,000,000원의 현금(예금)의 증여를 완료한다.

제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해당 현금증여는 E의 유상증자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유상증자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2.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받은 주식은 상장되기 전까지는 피고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며, 상장 전 매각을 원할 시에는 피고에게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원고 C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 내 또는 E가 상장이 되기 전에 E를 퇴사할 시에는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무상으로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원고 C 본인이 대금을 납입한 주식은 액면가로 피고에게 양도한다. 이 때 부수되는 세금 등의 비용은 원고 C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4. 위 특약사항은 원고 C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E는 2015. 11. 18.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000,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원)를 발행하였고, 원고 C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E 주식 25,000주(12,500,000원)를 취득하였으며, 증여받은 40,000,000원 중 주식 취득에 사용한 위 1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5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 4) 원고 C은 2017. 9. 20.경 E 주식 9,000주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의 E 주식 취득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 1) 피고는 2015. 2.경 원고 A에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인의식도 생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니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2%를 100,000,000원에 양도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5. 2. 24. 배우자인 F의 명의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2) 피고는 2015. 10.경 원고 B에게도 E 주식 1.5%를 50,000,000원에 양도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B는 2015. 11.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2015. 12. 14.경 피고로부터, 원고 A은 E 주식 36,000주를, 원고 B는 27,000주를 각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은 원고 A과 B를 의미한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아래와 같다.

2. 인수 주식수 : 36,000주(원고 A), 27,000주(원고 B)
3. 총 인수가액 : 56,268,000원(원고 A), 42,201,000원(원고 B)
4. 주식양수도일 : 2015. 12. 21.

[제7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해당 주식은 E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피고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며, 상장 전 매각을 원할 시에는 피고에게 “을”의 인수금액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4) 이후 E는 2017. 9. 29. 자본금 증가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80,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A은 E 주식 3,600주(18,000,000원)를, 원고 B는 2,700주(13,500,000원)를, 원고 C은 3,600주(18,000,000원)를 각 취득하였다.

5) 또한 2017. 11. 1. 무상증자를 통하여 원고 A, C은 각 32,400주를, 원고 B는 24,300주를 취득하였고, 결국 원고 A은 72,000주(= 36,000주 + 3,600주 + 32,400주), 원고 B는 54,000주(= 27,000주 + 2,700주 + 24,300주), 원고 C은 72,000주(= 20,000주 + 25,000주 - 9,000주 + 3,600주 + 3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E에서 퇴사할 경우 퇴사일 무렵 시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2017년 회사결산기준 주식의 가격인 주당 8,500원에 해당하는 금원(원고 A와 C은 각 612,000,000원, 원고 B 4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

나. 피고(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약정을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내지 주식양도계약으로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환매권)을 부여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부담한 주식인수 대금(원고 A 118,000,000원, 원고 B 63,500,000원, 원고 C 18,000,000원)을 그 환매대금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다툰다. 즉,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1, 2호증)는 위조²⁾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A와 B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수금액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원고 A 36,000주, 원고 B 27,000주)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적용될 뿐이다. 원고 C이 2011.경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000주는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고,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적용될 뿐이다. 또한 원고들이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피고가 환매할 당시의 주식 시가대로 매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E를 퇴사한 사실 및 E가 현재까지 상장되지 않은 사실,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들 일방의 의사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장의 송달로써 원고들이 보유한 E 주식 전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본소장이 피고에게 2018. 2. 23.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일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매수가격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와의 구두약정으로 원고들 퇴사일 무렵 시가로 정하였다고 주장(본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 주식양도계약 특약사항으로써 원고들이 실제로 부담한 주식인수대금으로 매수가격을 정하였다고 주장(반소)하며 다투고 있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나. 구두 약정 존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이 퇴사할 경우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퇴사일 무렵 시가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1, 2호증) 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B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원고 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56,268,000원 상당의 주식만을 양도해 주고 그 차액 43,73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원고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42,201,000원 상당의 주식만을 양도해 주고 그 차액 7,799,000원 상당의 각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18. 11. 27.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823호), 한편 위 원고들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

원고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자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원고들은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무고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980호), 제1심에서 2020. 3. 26.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 3호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 초안으로 작성된 것)일 뿐 최종 계약서가 아니므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참조).

2) 2017. 9. 29. 유상증자 이전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과 B의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위 주식을 인수한 인수금액으로 피고에게 위 주식을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주식 취득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A은 100,000,000원, 원고 B는 5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 A의 인수가액이 56,268,000원, 원고 B의 인수가액이 42,20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과연 어떤 금액을 위 주식 인수가액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해당 주식은 E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피고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며, 상장 전 매각을 원할 시에는 피고에게 원고 A과 B의 각 "인수금액"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문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총 인수금액'(주당 1,563원 기준 산출, 원고 A 56,268,000원, 원고 B 42,201,000원)은 세무사(G회계법인)의 제안으로 그 무렵 객관적으로 평가된 주식가액을 계약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보유주식을 원고 A과 B의 동기유발 차원에서 양도하였는데, 특약사항의 인수금액을 실제지급한 주식대금(원고 100,000,000원, 원고 B 50,000,000원)보다도 적은 위 금액들로 본다면 이는 위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3) E의 직원 H 역시 피고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는 2015년 여름경 피고가 주식 양수를 권유하면서, 혹시 회사가 잘 안 될 경우 대비하여 원금보장을 하여 준다고 설명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H가 이와 같은 경위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원고들 또한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4) 원고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E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인의식도 생기고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 호혜적으로 1억 원에 전체 지분 2%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자신이 퇴사하며 나올 때 투자원금 1억 원만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특약사항은 '위 원고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도 원고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나) 원고 C의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원고 C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 내 또는 E가 상장되기 전에 E를 퇴사할 시에는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무상으로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원고 C 본인이 대금을 납입한 주식은 액면가로 피고에게 양도하며(제3호), 위 특약사항은 원고 C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4호)'고 기재되어 있는바, E를 퇴사한 원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25,000주 및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000주를 위 특약사항에 따라 무상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2017. 9. 29. 유상증자 및 2017. 11. 1.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2017. 9. 29. 유상증자 및 2017. 11. 1. 무상증자를 통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이하 '2차 취득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위 각 계약과 같은 조건,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교부한 금액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및 증여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주식 매수가격 산정기준을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것이 2차 취득 주식을 취득할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여계약서에는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 상대방,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매수가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2차 취득 주식에 관하여 이전에 취득한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E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피고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합의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식매수가격은 이전에 취득한 주식들과 달리 매수청구 당시의 주식가치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셈이 되어 모순이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퇴사할 경우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퇴사일 무렵 시가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E 상장 전이거나 E를 퇴사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만 피고가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원고들이 E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원고들이 E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도록 피고가 소유한 주식을 매수하거나 E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원고들이 매도를 원할 때 E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을 매수해 주는 등 E 근무할 당시의 신뢰관계에 기한 시혜적 의미가 컸다고 보이는데,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교부한 금액으로만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보상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매수권리를 행사할 당시 주식가액이 원고들이 실제로 교부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도 있으며(원고들은 2018. 9.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보다 비싸게 주식을 양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E에 계속 근무하거나 E가 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가격 등 다른 조건으로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도 않는다. 라) 원고들도 피고와 주식양도계약이나 증여계약을 할 당시 특약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특약사항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양도 의사표시와 동시이행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2) E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E에 위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양도의사 표시 및 E에 대한 양도통지)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18,000,000원(= 100,000,000원 + 18,000,000원), 원고 B에게 63,500,000원(= 50,000,000원 + 13,5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주식양도통지의무 등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영 판사 박병곤 판사 최현정

목 록

1. E 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A 명의의 기명식 보통주 72,000주
2. E 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B 명의의 기명식 보통주 54,000주
3. E 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C 명의의 기명식 보통주 72,000주. 끝.

1)원고들은 2019. 9. 18.자 준비서면에서 이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E 주식 1주당 가치 24,874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기왕 청구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2)피고가 계약서 제7조 하단에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해 넣었다는 것이다.